

Investigation System on Fire-related Crime

- Problems and Solutions -

Kyu Ho Lee^{1#}, Jung Min Park²⁺

¹ Department of Police Fire Administration, U1 University, 310 Daehak-ro, Yeongdong-Eup, Chungbuk, Korea

²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Dongshin University, 67, Dongshinda-gil, Naju-si, Jeollanam-do, Korea

Abstract

Considering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fire scene and a high possibility of destroying the evidence, fire-related crime requires timely and professional responses compared to general crime. In South Korea, the special police system for firefighting has been introduced for this reason,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legal,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aspects. This study examined fire-related crime cases in Korea and proposes the solutions. First, in the legal aspect, we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legislation and the change in the scope of work, including the revision of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pection of dangerous goods, and the revision of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Second,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we proposed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ve righ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departments an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teams, the unification of organizational systems, and the collaborative investigation with prosecution and police. Finally, as for technical aspect, we proposed the securing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 equipment.

Key words: fire-related crime, special judicial police, fire investigation

1. 서론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된 강호순 사건은 전국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 적이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5년에 강호순은 이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방화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있었으나, 당시 소방대원과 화재조사관의 방화 의심 소견을 묵살한 경찰에 의해 화재는 원인 미상으

로 결론이 났고, 당시 집에서 사망한 강호순의 장모와 처의 사인은 단순한 질식사로 처리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 이후 자유의 몸이 된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8명의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되었다. 만일 2005년에 경찰이 강호순의 방화사건을 보다 면밀히 조사했고, 강호순이 방화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면, 이후 3년간 무고한 사람 8명이 살해되는 불행은 일어나

The 1st author: Kyu Ho Lee, Tel. +82-43-740-1574, Fax. +82-43-740-1259, e-mail. doclkh@yd.ac.kr

+ Corresponding author: Jung Min Park, Tel. +82-61-330-3562, e-mail. jmpark21@hanmail.net

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본 논문이 굳이 오래된 사건을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고찰을 해보기 위해서이다.

소방에 관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범을 수사하는 데는 신속성과 더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소방특별사범경찰제도가 특별히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소방사범 수사는 소방사범 처리 및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소방사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데 있어 소방사범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집행의 어려움이 드러나며, 집행에서의 재정문제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화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조사를 비롯한 소방 관련 국내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으나, 특별사범경찰 및 소방사범수사에 관한 연구는 Chae, *et. al.*, (2009); Woo(2011); Jeon(2012); Chun(2015); Park, *et. al.*, (2018); Cho, *et. al.*, (2018); Jung(2019)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방화로 인한 화재를 통해 보듯 화재 사건 및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향후 방화사건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사범 사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방사범 수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거법령 미비 및 직무범위 규정의 문제, 특별사범경찰의 전문성 부족, 수사권에서의 일반사범경찰과의 경합, 일반사범경찰과의 수사공조시스템 부재, 일괄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 등 소방사범 수사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소방사범의 사례를 고찰하여 그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법적·조직적·기술적 측면에

서 소방사범수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특별사범경찰제도

특별사범경찰제도란 일반사범경찰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수사하기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수사의 전문성·현장성·특수성·보안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 전문분야의 범죄수사권을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4년 5월 31일의 조선총독부령 제33호이다. 이어서 1944년 7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265호에서 사범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직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전매·산림 등 18개 부문에서 특별사범경찰 업무가 개시되었다. 2017년 현재 특별사범경찰은 총 1,815명이며, 소방위부터 소방준감까지의 특별사범경찰관은 1,357명, 소방사부터 소방장까지의 특별사범경찰리는 458명이다.

소방공무원이 특별사범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1961년 5월로 당시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국한하였으나, 2008년 서울특별시가 특별사범경찰지원과를 설치하고, 2009년 7월 경기도가 광역특별사범경찰을 발대 한 이후, 일반사범경찰로서는 수사가 어려운 소방¹⁾·산림·전매·해사·철도·세무·관세·환경·위생 분야 등에서 해당 분야를 맡고 있던 공무원이 특별사범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별사범경찰제도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97조,²⁾ [특별사범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사범경찰직무법] 제5조 등을 따르고 있다. 특별사범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검사의 사범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범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은 소방위 이상 소방준감까지는 사범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은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2) 삼림·해사·전매·세무·軍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소방공무원(소방준감 이하)인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소방위 이상)과 소방특별사법경찰리(소방장 이하)가 있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인 소방공무원에게는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주체가 되어 실제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한 범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사함과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의 보장에 앞장서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특별사법경찰은 그 권한 범위에 지역적 또는 사항적인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사뿐만 아니라 피의자조사나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 등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의 권한과 지위에서는 일반사법경찰과 다르지 않다.

2. 소방사범수사제도

일반적으로 소방사범이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를 진압하는 것과 관련된 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 소방·방재·안전관리 등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소방청을 설치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과 소방사법경찰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고려하

여 볼 때, 소방사범은 협의의 소방사범과 광의의 소방사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Central Fire Department, 2009: 13).

협의의 소방사범은 다시 [소방기본법] 위반사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위반사범, 기타 소방법령 위반 사범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반면 광의의 소방사범은 협의의 소방사범을 포함하여 형법 가운데 실화와 방화에 관한 죄 등을 범한 사람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협의의 소방사범에 더하여 실화·방화와 관련된 범죄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벌을 받게 될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2009: 94). 형법상 실화죄와 방화죄는 과실 또는 고의로 불을 놓아 일반물건·일반건축물·현주건축물³⁾·공용건축물을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함에 따라 성립하는 공적 위험범에 해당한다.⁴⁾

소방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과정은 내사, 입건, 관련자조사 및 증거수집 등 수사실행, 수사종결 및 사건 송치로 이루어진다. 내사는 단속업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현지조사 계획수립, 단속업체 선정, 범죄혐의 조사, 현장조사 및 입건 대상 선정,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을 하는 과정이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야 하나,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간주하게 되면 법령을 검토한 후 내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없을 시 내사종결이 가능하다. 내사를 통해 입건을 하면, 관련자 조사 및 증거수집 등의 수사를 실행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한다.

3) 제164조(현주건축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犯人 제외)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소훼결과 발생 시에 기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4조(현주건축물 등에의 방화치사상) 현주건축물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공공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예 불이 옮겨 불을 심리적인 가능성)으로, 일반인이 느끼는 심리적 위험을 말한다.

수사 종결은 화재진압과 함께 이루어지는 출동 시의 수사와 진화 후 수사 종결이 있다.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송치한다.

Ⅲ. 소방사범 사례

1. 2008년 승례문 방화사건

2008년 2월 10일 저녁 승례문 2층에서 하얀 연기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현관 일부를 절단하고 물과 소화약제를 뿌리는 등 온 힘을 기울였으나 11일 오전에 승례문 전체가 불에 휩싸이며 모두 붕괴·전소되었다.

이 사건은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은 방화범이 승례문 2층 누각에 계획적으로 잠입하여 서협문 쪽에서 동협문 쪽 방향 세 번째 중앙기둥 바닥에 시너 1.5l 세 병 중 두 병을 세워 놓고 한 병을 흘려 1회용 가스라이터로 방화한 후 도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고는 신속했으나 물을 지붕에 집중적으로 퍼부었음에도 전통 목조 건축구조에 대한 소방인력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승례문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문화재청과 소방대 간 협업체계의 문제였다. 승례문 화재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파괴할 수밖에 없었지만, 승례문이 국보 제1호 문화재인 점을 고려하면 문화재청의 통보가 필요했는데, 소화방법 결정 등의 의사소통 부재로 화재 진압이 지연되면서 화재가 확산되고 말았다. 소방대가 승례문에 도착했을 때는 불길 이미 적심층으로 전이되었고, 적심층은 서까래와 위쪽에 있는 목재 더미층으로 적심 밑에 서까래와 개판이 막고 있어, 고압 집중방수로마저 소화수가 침투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대는 고압의 집중방수를 하였으나, 기와 밑에 단단한 강회층이 적심층 위에 15cm 두께로 콘크리트처럼 덮여 있어 해머로도 파괴되지 않았고 진압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목조건축물은 항상 연소성이 강하고 건조한 구조적 특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데도, 문화재와 같은 특수한 대상물의 화재대응기법 등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안전대책이 매우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49년에 있었던 범룡사 금당 화재사건 이후로 문화재 방재의 날까지 지정하면서 정기적인 방화훈련 등을 통해 철저한 대처를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와 문화재청은 예산문제를 이유로 문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미루어왔다(Park, 2012: 65).

2.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반 경 밀양소재 세종병원 응급실 천장에서 전기합선 추정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방당국은 2017년 제천화재사고를 계기로 1월 9일 밀양의 세종병원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피난기구에 바닥고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정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며,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병원의 피해가 더 컸던 것은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의무 설치 의료시설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만 해당되는 것이다. 업종관계에 없이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11층 이상인데 세종병원은 6층이었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입법의 미비 또는 불비가 얼마나 큰 참사를 동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3. 2005년 강호순 안산 방화사건

2005년 10월 30일 안산 다가구주택 반지하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연쇄살인범 강호순 방화사건(이익방화사건)이다.⁵⁾

5) 일반적으로 방화범에는 주로 청소년이 범하는 손괴방화범(vandalism arsonist), 스틸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 흥분방화범(excitement

방화 전 상황을 보면, 강호순은 방화 약 4시간 전에 거실에서 장모 및 처와 함께 맥주 3병을 나눠 마셨고, 처와 장모는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작은 방에는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화재 발생은 한밤중에 일어났고, 큰 방 출입문 앞에서 시작되어 탈출이 어려웠다. 강호순과 그의 아들은 화재 인지 후 창문으로 탈출하였다.

소방대는 싱크대와 냉장고의 탄화 흔적을 근거로 주방 안쪽에서 출입문 방향으로 연소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발화 최초 지점을 안방의 거실 쪽 벽면 아랫부분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원인 미상으로 결론이 났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였다. 강호순은 그 사건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8명의 여성을 납치하여 살해한 혐의로 2009년 체포되면서, 2005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정황증거가 새로이 나타나게 되어 방화를 위장한 살인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호순은 재판과정에서 8명의 여성에 대한 살인은 인정하였지만, 처와 장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화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그러나 화재 발생 전 보험가입 및 혼인신고 등을 통해 볼 때, 아내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하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자의 진술(굉음과 비명이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 연소 패턴이 고인화성 액체의 탄화 흔적과 유사하다는 화재감식전문가의 진술, 농연으로 기절할 경우에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다는 의료인의 소견 등)과 정황상 간접적인 증거(과거 보험사기 경력, 화재 전 보험가입, 본인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장례 직후 보험사에 보험금에 대해 문의한 사실, 혼인신고 시점, 방법창을 발로 차서 열어 탈출했다는 초기 진술을 반복하고 나사를 풀어 열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소방서에서는 유류냄새는 맡지 못했지만 발화지점

에서 연소가 급격히 이루어진 현상과 벽면이 불에 타서 없어진 상태가 자연스럽게 못하다는 점에서 불 때 인화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초동수사단계에서 경찰과학수사팀 등이 감식하면서 화재 발생 후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선착대장)과 화재조사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소방대원이 방화로 의심된다고 인지하는 것을 묵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수사가 소방관의 화재조사보다는 우선이라는 인식,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소방서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국과수의 감정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검을 하지 않았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식사 처리한 것도 경찰 수사의 오류로 지적할 수 있다. 소방대원의 의견을 경청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부부문제, 보험 관련 이력 등을 보다 치밀하게 조사했다라면 당시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소방관과 경찰 사이의 의사소통 및 수사 공조의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방관이 방화수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할 수 있다.

4. 2008년 평택시 세탁소 방화사건

2008년 11월 25일 새벽 평택시 세탁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소방서는 방화로 의심한 반면, 경찰은 전기 누전 등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는 등, 소방과 경찰이 화재 원인을 달리 보게 되면서 사건이 쟁점화되었다. 소방서에서는 세탁소 내에서 2명이 취침하던 중 무엇인가 타는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깨어 건물 밖 천막 주변에 화염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100m 떨어진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접수가 보고된 점을 근거로 방화로 추정하였다.

arsonist), 과거 불쾌감의 복수심에서 범하는 보복방화범(revenge arsonist), 살인 등의 죄를 은닉할 목적으로 범하는 범죄은닉 목적 방화범(crime concealment arsonist), 주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범하는 이익방화범(profit arsonist), 정신이상 방화범(mentally disordered arsonist), 혼합형 방화범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상준·한재훈·류영신·이재석·서의진(2015), “방화와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연구(방화사건을 중심으로)”, 제29회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3-83면 참조.

그리고 재판 결과, 불이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면 내부에서 자고 있던 2명이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고 대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화재 연소가 풍향에 따라 외부에서 내부로 진행된 점을 근거로 방화로 판결되었다.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조사를 한 소방대원은 바람 방향과 이에 따른 연소의 진행이 외부에서 내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타는 냄새로 잠에서 깬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화재조사를 진행했지만, 뒤에 도착한 경찰이 초동조사 자료 검토를 간과하는 바람에 화재감식과 발굴 작업 등을 통해 전기 누전으로 발화가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만약 재판과정에서도 소방관의 전문성 있는 화재조사 의견이 무시되었다면, 경찰의 미흡한 화재 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소방사범으로 처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IV.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문제점

1. 법적 측면

1)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문제

우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수사를 하는데 있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증거물과 관계 서류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관리 간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강호순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 검찰은 대부분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화재사건·사고를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점에서도 특히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상호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화재조사 및 수사에 관한 통합 근거법령의 부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발화점을 찾지 못하여 주민들

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는 발화점에 대한 규명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재가 원인 미상으로 끝나는 것은 초기 목격자와 진술자 간 의견 차이가 있고 증거 확보도 부족하며 경찰과 소방공무원 간 의견 대립이 있는 데 기인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수사가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3) 소방특별사법경찰의 방화·실화사건 수사권 부재

화재조사에 대하여, 소방 쪽에서는 단순 조사를, 경찰 쪽에서는 처벌을 위한 수사의 목적으로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화재현장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화재발생종합보고서는 통계 및 내부행정 자료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화재현장에서 경찰은 수사권을 앞세워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 채취를 거부하는 등 조사 시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방화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기 때문에 소방에서는 분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인 화재조사관에게 화재수사권이 없어서 화재예방책임만 있을 뿐 소방사범수사를 위한 전문적인 분석과 예방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화재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시행규칙 조항과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 시행령을 대신하고 있다. 이 근거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유효한 훈령·예규로서 법규성이 없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없게 되어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 조직적 측면

1) 수사권의 문제

현행법상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검사)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소방관서)가 가지고 있다. 그

러나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비롯하여 [검찰청법] 제4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 따르면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증거에 대한 판단 및 법령의 해석·적용 등을 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일반적인 수사 활동에서의 주체성도 상실되고, 소방에 대한 검찰의 통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화재원인조사와 수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화재피해자로서는 경찰(체포, 신문, 피의자혐의 규명, 기소를 위한 증거자료수집 등)과 소방행정조직(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조사 등)이라는 2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므로 부담이 가중된다. 경찰과 소방은 업무 목적·인력·업무 능력·조사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면서도 현장조사가 필요한 점, 경찰의 인적 조사, 전문 감정 의뢰와 소방의 물적 대상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서로 유리된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연계되는 과정이라는 점 등에서 경찰과 소방이 소방사범 수사에 업무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2) 공조수사의 미흡

업무 공조는 유관기관 상호간 자료를 수집·공유하고 조회, 수배, 통보 또는 합동 수사를 함으로써 범인, 범인경력, 여죄, 신원불명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소방사범)를 검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조수사는 개인의 실적이나 공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지역 관할서를 중심으로 효율성 차원에서 조직 수사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범죄를 수사한다는 관점에서 치밀한 사고가 요구된다.

이처럼 소방사범 수사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조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공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의 규명은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예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고,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소방기관의 화재현장 조사와 경찰관서의 수사가 서로 중복됨으로써 조사와 수사가 소방기관과 경찰관서로 이원화된 채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이 화재조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조사의 과학성이 떨어지며, 일선 소방관서 또한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미비한 상태이고 인원이 부족하며 사범 업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방사범 DB시스템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조직 외적으로도 전문기관 자문시스템의 활성화가 미흡하고 경찰관서의 소극적 업무협조로 공조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기관의 화재조사는 경찰의 범죄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화재원인 및 화재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연소 진행 과정을 밝힘으로써 화재의 재발 방지에 주안점이 있다. 또한, 화재조사는 연소현상 및 현장 상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행정에 있어 화재 예방과 진압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는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반면, 경찰은 먼저 사람에 대한 조사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실화·방화 혐의자를 체포하여, 실화·방화 용의자의 혐의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심문하며 화재현장을 감식(과학수사팀)·감정 의뢰(국과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다음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재 피해자는 가벼운 화재인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범죄 용의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경찰은 형사법상 범죄 수사가 우선한다는 논리로 현장에 먼저 도착한 선착 소방공무원을 제쳐 두고 화재조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Lee, 2013: 243). 화재사건·사고의 특성상 현장의 물적 증거가 전소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목격자를 찾는 것

도 쉽지 않으므로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찰·소방·보험회사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소방특별사법경찰에게 실화·방화 등 화재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Go & Lee, 2011: 12).

3) 수사권 경합의 문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제외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동시에 수사할 경우에는 수사권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⁶⁾ 제21조를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관은 해당사건 수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될 경우,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방 검찰(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Jeong, 2014: 242-281).

3. 기술적 측면

1)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부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복잡다기한 전문 업무에 종사하므로 수사에 관한 전문성, 수사경험 등이 부족하며, 소속부처가 다양한 우리나라 행정조직 구조에서 수사

의 지휘체계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교육이 중요할 것이나, 실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경력 등이 반영되거나 고려되고 있지 않다. 검찰청이나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살펴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육생과 단기간 근무한 초보자가 같은 내용의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다. 강의 내용 또한 실무보다 이론 위주로서 현장감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검찰청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 지침이 부족하고, 그나마 실시하는 교육마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보수교육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여 수사 관련 변화 및 개선 내용의 전달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화재조사담당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화재조사 업무량이 많아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실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소방사범 수사에서는 인적 증거 못지않게 물적 증거(시료채취, 현장촬영 등) 또한 유죄입증에 중요한데 소방사범 수사기법 업무 매뉴얼도 정리되어 있지 않는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며 수사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2) 수사 장비 및 시설 등 수사환경 문제

2017년 2월 현재,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단위의 수사환경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용조사실과 전용컴퓨터 등이 매우 부

6) 범죄수사규칙 제3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외의 관계

제17조(공조의 원칙) 공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이송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 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인계한다.

제20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①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찰관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을 인수하여 수사해야 하며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제21조(수사가 경합되는 경우)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관은 해당사건 수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될 경우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방 검찰(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Table 1. Fire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Internal Fire Department file for 2017)

Division	Exclusive examination room		Dedicated computer(quantity)		Reference travel expenses	
	standard	possession	standard	possession	Number of people	Budget(1,000won)
Total	227	61	227	91	49	1,580
Fire department	19	9	19	15	49	1,580
Fire station	208	52	208	76	0	0

족한 실정이다. 또한,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사건·사고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수사 장비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데도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V.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 측면

1) 근거법령 입법 및 직무범위 규정의 개정
현행 소방관계법규는 화재조사 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방청장의 화재현장 통제권과 증거물 보존 조치권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청장의 화재조사 및 수사권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조사 및 수사결과를 환류하여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화재조사 및 수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형법의 방화·실화 관련 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소방의 화재수사권 독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

Table 2. Equipment and facilities equipped with fire department(Fire Department)

Division	Equipment name and facility size
Excavation tool (1 set)	Tools(nipper, pliers, Wire cutter, driver set, Spatter set, hammer, etc.), saw(wood, iron), electric drill, electric grinder, Multi-purpose knife, Vernier Calipers, u-type magnet, landing net, brush, broom, bucket, shovel, scraper
Recording device (14 kind)	digital camera(DSLR) set, video camera set, compact digital waterproof camera, color(photo) printer, rubber mats for shooting, TV, VTR, digital recorder, range finder, stopwatch, digital temperature hygrometer, digital wind direction anemometer, precision scales, tape measure
detecting- appraisal machine (13 kind)	insulation resistance meter, multi-tester, clampmeter, electrostatic measuring device, leakage current meter, electrode, complex gas meter, gas(beeper)detector, magnifying glass, stereomicroscope, infrared thermal camera, earth resistance meter, portable digital microscope
lighting equipment (5 kind)	generator, portable lighting equipment, flashlight, emitter, head lantern
safety equipment (7 kind)	protective clothing, protective gloves, safety shoes, helmet, mast(dust mask, respiratory mask), goggles, safety hook
evidence collation equipment (6 kind)	evidence collation tools(tweezers, scissors etc), evidence storage set(box, envelope, airtight container, cans for collecting bequests etc), evidence cover(number., arrow · 0 sign , sticker), evidence tag, collapse , latex gloves
fire investigation vehicle (1 kind)	special vehicles for use in fire stations
auxiliary equipment (7kind)	laptop computer, refrigerator, fire extinguisher, submersible pump, wire reel, portable air compressor, folding legs
additional recommended equipment (17 kind)	gas chromatography, high speed camera set, fire simulation system, X-ray machine, metallic microscope, specimen cutting machine, specimen molding machine, specimen grinding machine, contact resistance machine, DC voltage ammeter, Ac voltage ammeter, oscilloscop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lash point measuring instrument, ignition point measuring instrument, trace melting point measuring instrument , temperature recorder
fire investigation analysis room	Fire investigation analysis room - 30 square meter or more room that can effectively preserve and use equipment
fire investigation analysis room configuration equipment (8kind)	evidence storage, sample storage, experimental workbench, vise, sink, ultrasonic cleaning machine, experimental glassware(beaker, pipette, glass bottle etc), dryer

Table 3. Equipment and facilities equipped with fire department(Fire Station)

Division	Equipment name and facility size
Excavation too (1 set)	tools (nipper, pliers, Wire cutter, driver set, Spatter set, hammer, etc), saw(wood, iron),electric drill, electric grinder, Multi-purpose knife, Vernier Calipers, u-type magnet, landing net, brush, broom, bucket, shovel, scraper
Recording device (14 kind)	digital camera(DSLR) set, video camera set, compact digital waterproof camera, color(photo) printer, rubber mats for shooting, TV, VTR, digital recorder, range finder, stopwatch, digital temperature hygrometer, digital wind direction anemometer, precision scales, tape measure
detecting- appraisal machine (9 kind)	insulation resistance meter, multi-tester, clampmeter, electrostatic measuring device, leakage current meter, electrode, complex gas meter, gas(beeper)detector, magnifying glass, stereomicroscope,
lighting equipment (5 kind)	generator, portable lighting equipment, flashlight, emitter, head lantern
safety equipment (7 kind)	protective clothing, protective gloves, safety shoes, helmet, mast(dust mask, respiratory mask), goggles, safety hook
evidence collation equipment (6 kind)	evidence collation tools(tweezers, scissors etc), evidence storage set(box, envelope, airtight container, cans for collecting bequests, etc), evidence cover(number, arrow · 0 sign, sticker), evidence tag, collapse , latex gloves
fire investigation vehicle (1 kind)	special vehicles for use in fire stations
auxiliary equipment (7kind)	laptop computer, refrigerator, fire extinguisher, submersible pump, wire reel, portable air compressor, folding legs
additional recommended equipment (3 kind)	portable digital microscope, fire simulation system, electrostatic measuring device.
fire investigation analysis room	Fire investigation analysis room - 20 square meter or more room that can effectively preserve and use equipment
fire investigation analysis room configuration equipment (8kind)	evidence storage, sample storage, experimental workbench, vise, sink, ultrasonic cleaning machine, experimental glassware(beaker, pipette, glass bottle etc), dryer

령)을 ‘화재조사 및 수사법’에 포함하여 입법화함으로써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과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범위로 하고 있는데, 화재원인조사의 전문화를 위해 ‘화재조사 및 수사법’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하여 미국의 뉴욕주처럼 방화·실화도 소방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승례문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재 화재사건의 경우 화재진압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소방기본법]에 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별(소방)사법경찰관리가 소방법 위반사범 취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호에 규정된 특별(소방)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중 소방기관에서도 [형법] 제164조에서 제176조에 규정된) 소방 관련

범죄 수사권을 보장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형법] 제164조~제176조에 규정된 범죄라고 삽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방법규 어디에도 방화에 대한 대응을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방화관리자의 업무에 방화범죄 대응 임무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화재사건은 범죄 수사가 복잡하고 곤란하다는 점에서 소수의 검사가 수사지휘권까지 갖는 것은 검사로서는 과중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수사는 수사전문가인 특별사법경찰에게 일임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행과 같은 검찰과 특별사법경찰 간 상명하복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인

7) (현행) 제5조 제14호에 계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범죄.
(개정안) 제5조 제14호에 계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내에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범죄, 형법 제164조에서 제176조에 규정된 범죄.

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검사가 공소제기권만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3) 위험물사범 불심검문권 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의 불심검문권 등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는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찰관이라는 표현에 특별사법경찰 포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특별사법경찰이 불심검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 효율적이므로 개정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조직적 측면

1) 수사권의 조율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간 수사권이 경합될 경우, 현재는 수사를 주재하는 자가 검사인 까닭에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사건이 검사에 의해서 직접 처리되기보다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처리되므로, 검사가 수사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이 요구된다.

특별사법경찰제의 취지로 볼 때,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게 하는 기능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차원에서 광역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소방서 내 전문부서설치 및 시·도 광역수사전담팀의 구성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는 화재조사팀에서 화재조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검찰 지청 담당 별로 1개의 소방서에라도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업무의 지원 및 조정, 검찰과의 수사업무 공조를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문수사과의 신설이 요구된다. 서울시에서는 특별사법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범규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지원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본청에 화재원인 조사계를 두고 일선 소방서에서 규명하기 힘든 사안이 발생하면 분야별 전문가를 동원하여 조언 조사역할까지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도 시 소방국에 전담조사부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수사과가 신설된다면 특별사법경찰 지명자가 시·도 소방본부에 없어서 발생하는 수사권 부재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소방청 및 시·도의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시·도 광역수사팀에서는 소방서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Table 4. Criminal investigation rule revision(plan)

Criminal Investigation Rule Article 21	
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A police officer investigating a crime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when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is in conflict with the investigation conducted by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of the police officer, Shall be consulted.	① Police officers investigating crime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when the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is in conflict with the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take the lead of the Police Officer and take necessary measures And transfer them. ② When it is deemed necessary in the case of Paragraph (1), it may be reported to the local Prosecutor's Office or the District Attaché of the local jurisdiction where it is necessary to receive instruction on the adjustment.

곤란한 법령적용 등의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3) 조직체계의 일원화 및 검경과의 공조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규칙] 제6조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때의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성실 및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및 경찰청 등에 정기적으로 파견근무를 실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술한 승례문 방화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청·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 지연 등 이유로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화재를 비롯한 재난 발생에 대비한 협력시스템을 갖추고 정기적인 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호순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사건발생 초기에 참여한 각 기관이 앞다투어 일관성 없는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의 불신만 높아진 바 있다. 이는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여러 기관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지휘 통제하에 조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건 현장에서 불필요한 대답이 나타나기도 하며 현장의 혼잡으로 인해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사건·사고의 원인조사 및 수사에 관한 주된 권한을 소방특별사법경찰에게 부여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각 전문기관과의 TFT 구성을 통한 합동수사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기술적 측면

1) 전문인력의 확보

소방사범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해야 할 때가 있으나 절차 숙지가 되지 않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방특별사법경찰 채용 시 범죄수사 경력자나 전공자를 채용하고, 법무연수원이나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소방사범 전문수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화재범죄 수사는 최초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도 조사과정에서 방화를 증명하거나 어떤 사람이 방화범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때에는 모든 가능성이 밖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화재장소와 흔적 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조사해야 한다. 이런 조사는 잔존물에서 발견되는 열과 열 기류의 영향, 목격자 증언, 그을리거나 그슬린 부분 등을 토대로 화재 발생 시간대별 전개 양상 및 공간적 전개 양상을 복원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조사가 될 것이다.

전문교육이수자는 일정 기간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보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미국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다수가 수사 경력이 있으며, 연방사법연수원을 통해 수사업무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료 이후 일정 기간은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소방사범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2008년 승례문 방화사건처럼 대형 특수화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전문가그룹의 운영도 필요하다(Jeon, 2012: 222).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기법의 관리를 위하여 수사의 성공 또는 실패 요인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전산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을 검찰·경찰조직 등 전문 수사기관에 장기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검찰이 특별법 위반자를 수사한 후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실무진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연락관을 파견하여 상담 등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전문장비의 확충

우리나라 소방관서의 장비 보유상태는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판정하는 데 필요한 전문장비는 물론, 기

본적인 기자제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무리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과학수사를 뒷받침할 물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전문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인권이 중요한 시대에 수사상 인권침해의 소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증거확보를 위한 채증 장비인 카메라·녹음기·PDA 등과 수갑·전기 충격기·경찰 장구류, 지문조회기 등 직무상 적합한 장비가 속히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소방사범 수사에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거법령의 미비, 직무범위 규정의 문제,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미흡, 일반사법경찰과의 수사공조시스템 부재, 일반사법경찰과의 수사권 경합 문제, 일괄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법적·조직적·기술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방사범은 일반사법경찰이 다루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분야이다. 또한, 화재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고 화재로 인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보다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행법이 명시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의 소방사범 관련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의 적극 참여는 물론이고 소방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도 요구되며 소방사범 수사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일선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방사범 수사행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소방특별

사법경찰관리가 소방관계법규와 관련하여 소방법 위반 사범 취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업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에 규정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규정에 [형법] 제164조에서 제176조에 규정된 범죄라고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를 위하여 검찰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도 협력관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2차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범 수사를 하기 위한 불심검문권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에게도 부여해야 할 것이며, 검찰 지청 담당별로 1개의 소방서에라도 소방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문수사과를 신설하고 광역단위의 소방본부에도 소방사범 수사 전담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직 채용, 전문성 교육의 강화, 검찰 등에 정기적인 파견근무제의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소방사범에 관한 수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인권 경찰을 강조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소방역시 수사상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카메라·녹음기·PDA 등 채증 장비, 지문조회기, 수갑·전기충격기 등 직무상 필요한 장비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화재의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현행 화재조사 법령은 [소방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규칙과 세부시행지침으로 구성된 까닭에 화재조사 주체가 불명확하여 소방청장의 화재현장 보존·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소방청장의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수행의 저해요인

이 된다. 따라서 소방청장의 화재조사 권한, 화재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화재 조사결과를 화재 예방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화재조사 및 수사법’을 제정해야 하며, 방화·실화 관련 법규 집행을 위해 소방의 화재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연구대상을 국내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소방사범 수사제도에 한정하였으나, 향후 외국의 소방사범 수사제도 및 사례에 대한 고찰과 비교 연구를 통해 이론 정립 및 제도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이규호의 동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9년)을 재구성한 것임

References

- Central Fire Department. 2009. Theory of Firefighting Crime.
- Chae, Jin and Seong Cheon Woo. 2009.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by Investigation Case of the Fire Crime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3(6).
- Cho, Hee Wook. 2005. *Problems and Plan of Daegu Subway Fire Accident*. National Assembly Report.
- Choi, Jong Sul. 2014.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Korea and the Improvement Plan. *Police Studies Journal*. 9(3).
- Gang, Yun Jin. 2010. *A Study on Cause Analysis and Preventive Measures for Fire Accidents during Construction*. Ph.D.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 Go, Gi Bong and Shi Hyung Lee.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3(2).
- Go, Gi bong and Shi Hyung Lee.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Fire Cau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ivil Engineers*.
- Jeon, Dae Yang. 2015. The Analysis of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and Improvement Plan. *The Korean Crime Psychology Study*. 11(3).
- Jeon, Jong Jeong. 2012. A Study on the Capacity Enhancement of Specialist Judicial Police Expertise for Firefighting Investigati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ivil Engineers*. 12(3).
- Jeong, Ung Seok. 2014. A solution of competitions between general judicial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The new trend of criminal law. *Supreme Prosecutors' Office*. 43(1).
- Jo, Dae Keun, Hwang Ui Hong, and Don Mook Choi. 2017. Study on the Method of Effectiv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32(6).
- Jung, Hyun Kyun, Ui Hong Hwang, and Don Mook Choi. 2019.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Method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19(3).
- Kim, Chan Dong and Se gu Lee. 2009.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eoul Municip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Hyun Ho. 2014. A Study on Enactment of the Fire Investigation Act. A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Kim, Hyung Doo. 2007.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urrent Fir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1(1).
- Kim, Jong Oh. 2011. A Study on Methods to Improve the Role of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 Service. *Korea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Bulletin*. 20(4).
- Kim, Kyung Hee. 2004.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in Russia. *Foreign Disaster Prevention System*. 6(1).
- Kim, Kyung Ok. 2009. *A Study on the Profiling of Fire Criminals*. Ph.D.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Kim, Kyung Soo. 2012.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Fire Administration. A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Kim, Ok Seung. 2014. A Study on the Fir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Role of Special Judicial Police. A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Kim, Sung Gon and Chan Seok Park.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pertise in Fire Investigation through the Fire Investigation of Fire Fighting Organiz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afety Management*. 16(3).

- Kwon, Chang Guk. 2010. A Review of Criminal Legal Issues in Fire Inci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Policy Studies*. 22(2).
- Lee, Ha Sub. 2011.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Solution of Fire Crimes. *Crisisonomy*. 7(5).
- Lee, Jung Il. 2013. *Introduction to Small Business*. Seoul: Yelin.
- Lee, Sang Joon, Jae Hoon Han, Young Sun Ryu, Jae Seok Lee, and Ui Jin Seo. 2015. A Study on Fire and Anger Control Disorder. The 29th Korea Fire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 Moon, Yong Su. 2008. A Study on Improvement of Fire Inspec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 Nam, Sang Wook. 2002. Problems and Supplementary Measures on Fire Investigation Methods. Emergency Issues and Challenges of 21st Century Fire Fighting Disaster(Discussion House). Fire Frontier. National Assembly Fire Prevention Policy Research Meeting.
-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2009. Theory of fire-cracking.
- Oh, Seung Joo. 2013. A Study on Efficiencies on Fire Criminal Investigation. A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Park, Chang Soon. 2003.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n Fire Administration. *Korean Police Academy Issue*. 5.
- Park, Dae Woo. 2012. Safety measures for cultural properties through analysis of fire cases. *Journal of Korea Disaster Information Society*. 7(1).
- Park, Hyeong Jin, Jung Rae Kim, Jong Buk Kim, Jin Chae, and Hyun Seok Kwon. 2018.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 Special Fire Police Judicial Police System.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32(5).
- Park, Kyung Rae, Jae Hyeon Seung, Hyeon Gi Sin, and Doo woo Kim. 2012.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the Special Enforcement Agency of the Special Envoys. Research Series 5. Korea Criminal Policy Institute.
- Park, Sang Chun. A Study on Securing the Fire Investigation Right about Arson and Accidental Fire. A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Seung, Jae Hyun and Hyeon Wook Jeon. 2015. Strengthening Special Judicial Police Capabilities and Improvement of Command System. Research Report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 Song, Yong Joo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Capacity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of Fire Fighting. A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Woo, Seong Cheon, 2011. A Case Study on the Execution of Fire Criminals Arrest Warrant. *Crisisonomy*. 7(5).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운진. 2010. 건축공사 중 화재사고의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명지대학교.
- 고기봉, 이시형. 2010.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3(2).
- 고기봉, 이시형. 2011. 우리나라 방화원인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권창국. 2010. 화재사건에 있어서 형사법적 쟁점의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논문집. 22(2).
- 김경수. 2012. 소방사범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경기대학교.
- 김경욱. 2009.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구. 박사논문. 경기대학교.
- 김경희. 2004. 러시아의 방재대책. 외국의 방재체제. 6(1).
- 김성곤, 박찬석. 2014. 소방조직의 화재수사권 확보를 통한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3).
- 김옥승. 2014. 화재조사 및 소방사범 처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단국대학교.
- 김종오. 2011.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제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4).
- 김찬동, 이세구. 2009.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현호. 2014. 화재조사법 제정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단국대학교.
- 김형두. 2007. 현행 화재조사 및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1(1).
- 남상욱. 2002. 화재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대책. 21세기 소방방재의 현안과 당면과제. 소방프런티어·국회소방방재정책연구회.
- 문용수. 2008. 화재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

- 소방학회논문집. 박사논문. 단국대학교.
- 박경래, 승재현, 신현기, 김도우. 2012.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대우. 2012. 화재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재안전대책. 한국재난 정보학회논문집. 7(1).
- 박상천. 2014. 방·실화 화재수사권 확보에 관한 연구. 소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단국대학교.
- 박창순. 2003.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5.
- 박형진, 김정래, 김종복, 채진, 권현석, 이시영. 2018.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2(5).
- 송용준. 2015.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경기대학교.
- 승재현, 전현욱. 2015.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방안.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 오승주. 2013. 화재범죄 수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동국대학교.
- 우성천. 2011.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 Crisisonomy. 7(5).
- 이상준, 한재훈, 류영선, 이재석, 서의진. 2015. 방화와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연구. 제29회 한국화재조사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 이정일. 2013. 소방학개론. 서울: 예린.
- 이하섭. 2011. 방화범죄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7(5).
- 전대양. 2015. 방화범죄 수사체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1(3).
- 전종정. 2012. 특별사법경찰 전문성제고를 위한 소방사범 수사역량강화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2(3).
- 정응석. 2014.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할경합의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43(1).
- 정현균, 황의홍, 최돈묵. 2019.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9(3).
- 조대근, 황의홍, 최돈묵. 2018.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2(6).
- 조희욱. 2005.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문제점과 방안. 국회보. 중앙소방학교. 2009. 소방사범처리론.
- 채진, 우성천. 2009.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3(6).
- 최종술. 2014.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9(3).
- 방화와 실화의 죄. 서설, 방화죄. blog.naver.com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승례문 화재조사 결과. blog.daum.net
-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blog.daum.net
-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likms.assembly.go.kr

Received: Jul. 8, 2019 / Revised: Jul. 30, 2019 / Accepted: Aug. 23, 2019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초록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는 화재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고 화재로 인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조직적·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사범의 사례를 고찰하고, 그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는 근거법령 입법 및 직무범위 규정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위험물사범 불심검문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수사권의 조율, 소방서 내 전문부서설치 및 시·도 광역수사전담팀의 구성, 조직체계의 일원화 및 검경과의 공조수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장비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소방사범, 특별사법경찰, 소방수사

Profiles **Kyu Ho Lee** : He received a Doctor of Law from Soongsil University in 1995 and also a Doctor of Fire Science from Dongshin University in 2019. He is a senior vice president at the Korean Law Society and the Korean Legal Protection Society. He is a professor of police fire administration at U1 University, and is the Graduate Dean & Admissions Student Director.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riminal Law, Criminal Policy, Fire Law Policy. He has published 130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26 books. He was awarded the Best Paper Award twice by the Korea Law Society and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education category 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 Press Conference(doclkh@yd.ac.kr).

Jung Min Park : He received his Ph.D.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07. He is a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at Dongshin University.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Fire Service Administration,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public finance. He has published 22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5 books, including 3 co-author books(jmpark21@hanmail.net).

